

의안번호	제 42 호
의결연월일	2003. . .

의결사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3. 11. 28

# 사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일자	2003. 11.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 받아 처리하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3조)

(2) 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4조제1항)

(가)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 안전도검사 관련사항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

- (1) 안전도검사는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위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1)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시장이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마.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 3.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4.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연간 세외수입 (수수료) 분석

○ 수수료 총액 : 금25,714천원

- 신규허가 : 금4,937천원

- 연장허가 : 금8,082천원

- 신고사항 : 금12,695천원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5. 12 ~ 2003. 6. 7 (26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 및 인터넷 게시공고

(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 : 의견제출내용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기타 위원회 심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1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사천시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2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로법 등)</li> <li>○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 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li> </ul>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 (대표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li> </ul>
기타교육	별도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li> </ul>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제14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외의 간판)  나. 건물 측 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야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 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 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 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 벌론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태료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0.8제곱미터 이하</li> <li>- 0.9~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3제곱미터 이하</li> <li>- 1.4~1.6제곱미터 이하</li> <li>- 1.7~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제곱미터 이하</li> <li>- 2.4~2.6제곱미터 이하</li> <li>- 2.7~3.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0.8제곱미터 이하</li> <li>- 0.9~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3제곱미터 이하</li> <li>- 1.4~1.6제곱미터 이하</li> <li>- 1.7~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제곱미터 이하</li> <li>- 2.4~2.6제곱미터 이하</li> <li>- 2.7~3.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p> <p>·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8만원</p> <p>13만원</p> <p>19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39만원</p> <p>45만원</p> <p>60만원</p> <p>79만원</p> <p>80만원</p> <p>+10만원</p> <p>5만원</p> <p>7만원</p> <p>9만원</p> <p>15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0만원</p> <p>49만원</p> <p>50만원</p> <p>+5만원</p>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태료
<p>나. 현수막</p> <p>(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7제곱미터 이하</li> <li>- 3.8~4.4제곱미터 이하</li> <li>- 4.5~5.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제곱미터 이하</li> <li>- 6.1~8.0제곱미터 이하</li> <li>- 8.1~10.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7제곱미터 이하</li> <li>- 3.8~4.4제곱미터 이하</li> <li>- 4.5~5.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제곱미터 이하</li> <li>- 6.1~8.0제곱미터 이하</li> <li>- 8.1~10.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5만원 7만원 9만원</p> <p>13만원 15만원 19만원</p> <p>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p> <p>5만원 7만원 9만원</p> <p>13만원 15만원 19만원</p> <p>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p> <p>5만원 7만원 9만원</p>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태료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p> <p>·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p> <p>·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p> <p>·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12만원 15만원 18만원</p> <p>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p> <p>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p> <p>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p> <p>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p> <p>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p> <p>25만원 45만원 100만원</p>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  
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  
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행강제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행강제금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행강제금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m <sup>2</sup> 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가로형간판에 준함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m <sup>2</sup> 당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행강제금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이용간판에 준함</li> <li>·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li> <li>·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li> </ul>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 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 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 후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b>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div>			

【별지 제6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사 천 시</p>
---

후 면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자 격 기 한( 20 . . . ~ 20 . . . )</p> <p>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p>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 사유				
<p>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인)</p> <p>사 천 시 장 귀 하</p>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b>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b>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사    천    시    장            인                 </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별지 제9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 사 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 소		
교육계획	⑥ 일 시		
	⑦ 장 소		
⑧ 불 참 사 유			
<p>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귀하</p>			
<p>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b>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p>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사    천    시    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 ①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제3항(위반에 대한 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제20조(과태료)**

-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3조제2항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 제33조제5항 및 제6항

-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제34조제1항제2호(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 2.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

-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41조제1항 및 제3항(옥외광고업의 신고)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제1항(교육의 위탁)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영 제47조제1항(이행강제금의 부과)

-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제13조제3항(현수막의 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